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65

발의연월일: 2020. 9. 7.

발 의 자:한병도·김승원·이형석

오영환 · 이상헌 · 권칠승

정일영ㆍ허 영ㆍ황 희

박상혁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4조에 따라 학교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병원이 지방세 납부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여, 이에 관련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내용을 명확히 규 정하려는 것임(안 제37조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56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 제목 "(국립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감면)"을 "(국립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	제37조(국립의료기관 등에 대한
면)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	감면) ①
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	
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	
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,	
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	
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	
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	
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	
감한다.	
1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	<u>&lt;삭 제&gt;</u>
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	
<u>병원</u>	
2.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	<u>&lt;삭 제&gt;</u>
법」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	
학교치과병원	
3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	<u>&lt;삭 제&gt;</u>
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	
4. • 5. (생 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6.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	<u>&lt;삭 제&gt;</u>
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	
학치과병원	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